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가단3569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20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. 목록 기재 건물(별지1. 목록 ‘1동의 건물의 표시’란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.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.15㎡ 부분)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4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3.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강호

별지

- 1)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설행하여 판단한다.